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4. 2. 20.

다.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4. 2. 2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아동보육과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변경된 서울특별시 급식지원 대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급식지원 대상 변경 (제3조 제2호)
- 급식지원 대상 지급기준 변경 (제3조 제6호)
- 별지 제1호 서식 문구수정 및 기준변경
- 별지 제3호 서식 문구삭제

3. 검토보고 (장홍용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2023. 4. 11.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급대상을 수정하고, 서울시 변경 내시 조정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을 변경하는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제2호에서는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구의 아동”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구의 아동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으로 수정하고,
 - 안 제3조제6호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 별지 제1호서식에서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구의 아동”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구의 아동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으로 수정하고,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변경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식품권〕”을 삭제하려는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대상을 수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법규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3조제6호의 지급기준을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지원 변경 내시 조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변경하는 것은 시·구 매칭사업(50:50)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급식지원방법 중 “〔식품권〕”을 삭제하는 것은 현재 아동 급식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급식권을 급식지원방법에서 삭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정과제(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배달앱 연계를 통한 온라인 주문 결제 시스템으로 급식메뉴 선택권을 넓혀 아동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면결제의 어려움과 함께 결식아동에 대한 낙인효과도 없애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2.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현황

2024. 2월 기준

구분	대상자	단가(1식)	비고
아동급식	823명	9,000	시구 50:50

* 단가는 2024. 2월부터 인상된 금액(기존 1식 8천원)

3. 서울시 아동급식지원 변경 내시 공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아동 급식지원 변경 내시 조정 통보

1. 「2023년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계획 송부」(아동담당관-5900, 2023.3.1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급식 사각지대 적극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23년도 10월부터 차차상위계층(중
위소득 60% 이하)아동까지 아동급식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변경내시를 통보하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변경)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의 아동

- 붙임 1. 2023년 아동급식 변경내시 1부.
2.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치구 아동급식 담당부서

주무관 류하영 아동정책팀장 전규영 아동담당관 09/13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18951 (2023.09.13.) 접수 아동청소년과-18040 (2023.09.13.)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68 /전송 02-2133-0813 / yurujun00@seoul.go.kr / 부분공개(5)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